

○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

※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-161호(2008.1.8)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여부를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

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표시과목 또는 자격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. 다만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대학의 '교원양성위원회' 심의를 거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.
- 산학점임교사 등(명예교사 제외)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
- 교육대학원에서 '사서교사(2급)', '영양교사(2급)', '전문상담교사(2급)'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」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, 학력인정시설,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(시설)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.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'경력인정증명서'를 제출하여야 함.(단, 교육봉사활동 면제 불가)

☞ 관련 분야 자격증(「유치원 및 초·중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제6조 참고)

- 사서교사 : 사서
- 영양교사 : 영양사
- 전문상담교사 : 청소년상담사, 민간자격 소지자(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,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)

☞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

- :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,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(대학 포함)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 부터 확인받은 '경력인정증명서'(서식 5-1)를 제출하여야 함